

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 안	
번 호	27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(과태료)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됨으로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함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 폐지

3. 관계법령

- 가.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
- 나.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8호

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· 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
한다

부록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